

【연금 소득자 소득 · 세액공제 신고사항】

◎ 기본공제 <소득세법 50조>

공제 구분	공제요건	공제금액	증빙서류
본인공제	소득자 본인	150만원	없음
배우자	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(법률혼)	150만원	주민등록등본 또는 주소지를 달리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※ 해당자 추가제출 - 일시퇴거자등거가족상황표 등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- 가정위탁보호확인서
부양가족공제	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- 직계존속 (만 60세 이상, 주거형평상 별거 허용) - 직계비속 (만 20세 이하) - 형제자매 (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, 주민등록상 동거)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 (주민등록상 동거) -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 ※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연령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※ 당해연도 이혼한 배우자는 공제 대상 제외 ※ 사위 혹은 며느리는 적용하지 않음 단,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만 적용 ※ 당해연도 중 사망하거나 출생하면 공제대상자에 해당 됨 ※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할 경우 공제대상자에 제외됨 ※ 배우자 및 자녀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됨 ※ 기본공제는 다른 소득자(근로소득자 등)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음	1인당 150만원	

☆ 소득금액 요건

거주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)

▶ 연간 소득금액이란?

종합소득금액(이자·배당소득, 근로소득금액, 사업소득금액, 기타소득금액, 연금소득금액)과 퇴직소득금액, 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입니다. 이 경우,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,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총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◎ 추가공제 <소득세법 51조>

공제구분	공제요건	공제금액	증빙서류
경로우대	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	1인당 100만원	
장애인	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	1인당 200만원	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수첩, 복지카드 사본
	기본공제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(고엽제 후유증 환자 포함)		국가유공자 확인원 또는 상이자증명서 사본
	기본공제 대상자 중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		장애인증명서 (의료기관발급)
부녀자	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- 배우자가 있는 여성 -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	50만원	
한부모	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※ 부녀자공제와 중복일 때 한부모공제만 가능	100만원	

◎ 세액공제 <소득세법 제59조의2, 소득세법 제59조의 4>

공제구분	공제요건	공제금액	증빙서류
자녀	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8세이상 자녀(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) 및 손자녀 ※ 장애자녀는 만20세 이상도 가능 ※ 아동수당을 받는 만 8세미만 자녀 제외	1명 : 15만원 2명 : 35만원 3명이상 : 35만원+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	
출산·입양	당해연도에 출산·입양자녀가 있을 경우	첫째자녀 : 30만원 둘째자녀 : 50만원 셋째자녀이상 : 70만원	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
표준세액공제	거주자 기본적으로 공제 적용 ※ 세법상 거주자 :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소(居所)를 둔 개인	7만원	없음